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07 | 2025.11.17 (2025.11.10~2025.11.1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차전지 분야 제조강국, 차세대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무상할당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7인)**」,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를 포함시키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4인)**」 ,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문체위>, <산자위>, <복지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및 <예결위> 등 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기후에너지환경부) 7
-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 발표(산업통상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9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10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1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1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7인) 1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1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16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1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3인) 1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18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1인)	1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1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1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20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4인)	21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1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의원 등 10인)	2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2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경의원 등 11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2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26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3인)	27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년의원 등 51인)	27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2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29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형사]** 골프장에 대한 단수·단전조치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 **[환경]** 기업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시급 : 정부 2035 NDC 결정에 따른 시사점
- **[건설/부동산]** 현장설치도 주방가구 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현장설치 업무를 전문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0. 29. - 2025. 11. 1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53~61%로 확정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4기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2025-11-11
----------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함.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₂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음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있음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임

2.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으로, 이번 4기 할당계획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의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음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음.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함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을 구분하여 선형감축경로로 총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음.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함

3.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16~2022)가 변경됨에 따라, 3기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게 과잉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할 계획임

산업통상부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 발표

- K-배터리 표준화 포럼 개최, 2030년까지 이차전지
국제표준 9종 등 25종 표준 개발 목표

2025-11-05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차전지 분야 제조강국, 차세대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음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는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마련된 이번 전략은 상용, 차세대 및 사용후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30년까지 국제표준 9종 개발, 국가표준 10종 및 단체표준 6종을 제정할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음

① 먼저, 「상용 이차전지」와 관련하여 셀 열폭주 발생 가스 분석방법, 상태 정보 분석방법,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음극재의 성분 분석방법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차전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선박·드론·로봇·건설기계용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도 신규 제정할 계획

② 향후 주력 제품이 될 「차세대 이차전지」의 경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을 위해 전고체전지의 고체 전해질 분석방법, 리튬황전지와 소듐(Na)이온전지의 셀 성능·안전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임

③ 탄소배출 저감과 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용후 전지」의 경우 용어 정의, 운송·보관 지침,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관련 표준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의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표준을 개발해 나갈 예정임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 예정인 이차전지 표준이 제정되면 배터리 안전성과 신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면서, 이번 전략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2026-11-12 시행 예정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11-11 시행
----------	-----------------------------	---------------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을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고,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5-12 시행 예정
----------	-------------------------------	------------------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며,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유해성미확인물질’을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026-05-12 시행 예정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산출 기준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와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2026-11-12 시행 예정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함. 아울러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5-12 시행 예정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11 ~2025.12.22.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허용 및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더 많은 기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국세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전화: 044-215-5154, 팩스: 044-215-8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2025.11.12. ~2025.12.22.
-----------	-------------------------------------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676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전화: 044-202-6293, 팩스: 044-202-6052)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11. ~2025.12.05.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유·무상할당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전화: 044-201-6593, 팩스: 044-201-6594)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10.
~2025.12.22.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섭하며, 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화: 02-2100-2548, 팩스: 02-2100-254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2025-11-11 발의
---------	-----------------------------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전문 공정 수요 및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는 인력 고용주체인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되어 있어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문제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등)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25-11-12 발의
---------	-------------------------	---------------

현행법은 자사주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소각 및 처분, 처분의 대상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자사주를 특정대상에게 처분해 지배권을 강화에 활용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호를 저해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는 한편, 자사주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하도록 해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3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025-11-11 발의
-------	---	---------------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 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고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폐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생의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7인)

2025-11-11 발의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선수금 등 자산 운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대다수가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025-11-12 발의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으로 오인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이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의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3조의2 및 제 43조)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2025-11-14 발의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이나 명확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주저하게 됨.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제2항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2025-11-10 발의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투입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이 수년간 동결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대학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학의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학생의 입장에서 고물가 시대에 대학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임

이에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2025-11-10 발의

최근 지방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도청을 각 지방의 거점이 되는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이 없음. 그러나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려는 것임 (안 제63조의3 신설)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2025-11-12 발의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최첨단 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우주항공산업은 아직은 유치(幼稚)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재해·책임 등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 대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우주항공산업체들은 높은 보증·보험료를 지급하고 민간의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민간 보험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로 출재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그러나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전산 시스템 개발, 전문 인력 채용, 초기 운영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이 신설되더라도 우주항공산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대상 사업도 한정되어 있어 보증료 및 공제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한편,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다수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동일한 기술·설비를 활용하여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양 부문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보증·공제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제조합 신설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 및 고정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함)를 포함시키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방위산업 생태계의 유지·확장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2025-11-13 발의

최근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교통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에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분야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025-11-11 발의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7조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3인)

2025-11-13 발의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는 총 1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이동통신 3사의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20,171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또는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3조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2025-11-12 발의

최근 극장 상영과 무관하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영화가 동시·조기 공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거 극장, IPTV, 홈비디오, 케이블채널, OTT 등의 순으로 배급되어 온 영화산업의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관련 업계 전반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플랫폼 간 유통 유예기간인 ‘홀드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만 의존하는 실정임. 그 결과 글로벌 OTT의 조기 온라인 공개에 따른 각 국내 산업 주체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투자 회수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영화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 주요 해외 국가들 역시 일정 기간의 극장 상영 이후 온라인 공개라는 기본 질서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화의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 등은 문화적 다양성과 향유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8조제4항, 제98조제1항제1호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1인)

2025-11-12 발의

K-콘텐츠의 국내외 인기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그 규모 또한 방대해지고 있음. 최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로 대두되었던 누누티비, 뉴토끼 등 대규모 불법사이트의 경우를 보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가 최초 공개되는 날부터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고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대체 사이트가 다시 생겨나는 등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만연하고 있음

현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있으나,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또한,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업계의 고통과 피해는 누적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저작권침해대응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전방위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빠른 속도로 자행되는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2025-11-1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함. 또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가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23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어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주택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주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는 별도로 입주대상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를 개선·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1-10 발의

현행법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800c-km 지중화였으나, 2024년까지 4년간 약 411c-km 지중화에 그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저조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일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용 지원이 끝나게 되면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더 큰 차질이 예상됨

이에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지연된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 대상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2025-11-11 발의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 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28조제3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2025-11-1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에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4인)

2025-11-12 발의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25조제2항),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025-11-1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 100’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2025-11-12 발의

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온라인에 게시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피해 및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에 맞추어져 있어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시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한 자율규제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2025-11-12 발의

현행법은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근거는 정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오·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2025-11-10 발의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안 제161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2025-11-10 발의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70조).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토록 하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72조, 제175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2025-11-10 발의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1-10 발의

2024년 사고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827명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의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작업중지의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나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작업중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 (안 제55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1-10 발의

히트펌프(Heat Pump)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의 열을 흡수·이동시켜 난방·냉방·급탕 등에 활용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로, 보일러 등 기존 연소방식 대비해 3~5배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임. 이러한 특징을 가진 히트펌프는 건물·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됨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히트펌프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지정하고, 설치보조금·세제혜택 등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인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6조의4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025-11-11 발의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025-11-11 발의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2025-11-12 발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마목)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2025-11-14 발의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활용에너지 발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여기서 논의되는 미활용에너지의 대부분은 폐열·수열·하수열 등의 온도차에너지임.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열에너지 소비가 전기에너지보다 더 큰 구조를 유지해왔음. 따라서 열부분의 탄소감축 없이 탄소중립은 어려운 상황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히트펌프용량은 대형화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추세임. 일본은 온도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지하수, 하천수, 하수 등의 수원을 열에너지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냉난방시설 등에 2035년까지 10%의 하수열을 이용할 계획임.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의 시행령에는 수열에너지가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온도차에너지인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

2025-11-10 발의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질서 또한 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년의원 등 51인)

2025-11-11 발의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여 년간 세종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여전히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핵심 헌법기관은 서울에 남아있고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세종시는 불완전한 수도에 머물러 있음

행정 비효율성은 심화하고, 애초 목적이었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임.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 과밀,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 혼잡,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로 소멸 위기에 직면함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구조를 서울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첨단바이오·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행정·입법 등 모든 중추 기능을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극대화,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의 극대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2025-11-13 발의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사업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 설치하여 수십 년에 걸쳐 특정소수가 무기한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궤도운영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려가 있음

이에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안 제4조제5항)

그리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영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또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2025-11-13 발의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업 초기 충분한 토지 확보나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면서 부실한 조합이 설립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후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5-11-14 발의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이자 대중교통 보완수단으로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주차·방치,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안전 우려 역시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율이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령, 개별 조례 등에 분산되어 있고, 대여사업 역시 별도 등록이나 허가 없이 난립하는 구조여서,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규제가 적용되고, 이용자와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에 대해 지역마다 전혀 다른 규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무단 방치, 주차 공간 잠식, 보행로 점유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책임 주체와 관리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 불편과 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기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도시·군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등 각종 교통·도시계획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시설 확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교통체계 안으로 편입하고자 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전국 단위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과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11/19(수) 10:00	- 고유법 심사
기재위	전체회의	11/17(월) 10:00	- 예산안 의결
	조세소위	11/17(월) 10:30	- 법안 심사
	경제소위	11/19(수) 10:00	- 법안 심사
과방위	전체회의	11/17(월) 15:00	- 예산안, 법안 상정
문체위	전체회의	11/17(월) 13:30	-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체육관광소위	11/18(화) 14:00	- 법안 심사
	문화예술소위	11/20(목) 14:00	- 법안 심사
산자위	전체회의	11/17(월) 14:00	-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중소벤처소위	11/18(화) 10:00	- 법안 심사
	산업특허소위	11/19(수) 10:00	- 법안 심사
복지위	전체회의	11/17(월) 10:00	-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기후노동위	고용노동소위	11/18(화) 10:00	- 법안 심사
	환경소위	11/20(목) 10:00	- 법안 심사
국토위	전체회의	11/18(화) 14:00	-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17(월) 14:00	노사공존과 지속가능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방안 국회 토론회	이용우 의원실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11/17(월) 15:00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안	안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11/18(화) 10:00	경제정의 공정사회를 위한 형사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사법특혜 방지 및 민생 안전망의 "이호진 방지법"	정준호·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11/18(화) 10:00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호 대책	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8(화) 14:00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내용을 담았나?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9(수) 15:00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소병훈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11/20(목) 10:00	AI 전쟁 중심에 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한중의원연맹 2025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2	김태년·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0(목) 10:00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 유전자교정 기술과 규제 혁신	최수진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21(금) 13:30	한국경제의 승부수, 자동차·반도체 + 신성장 산업: 2025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5차 산업포럼	주호영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자료집 등	11/17(월)	「Data+」 제22호(2025-22호) 발간	국회도서관	
	11/19(수)	「World&Law」 2025-13호 발간		
	11/19(수)	「금주의 서평」 제754호(2025-45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10(월)	「Data+」 제21호(2025-21호)	국회도서관	
	11/1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4호(2025-21호)		
	11/12(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1호(2025-21호)		
	11/12(수)	「금주의 서평」 제753호(2025-44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10(월)	형사	골프장에 대한 단수·단전조치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11/11(화)	환경	기업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시급 : 정부 2035 NDC 결정에 따른 시사점
11/12(수)	건설/부동산	현장설치도 주방가구 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현장설치 업무를 전문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11/14(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0. 29. - 2025. 11. 11.)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